

발급번호 : 0507-3055

# 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

「축산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6년 05월 11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진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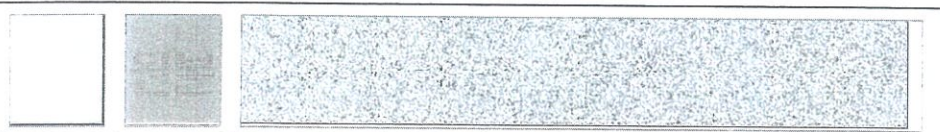


신청인	성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소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도축장	업체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6년 05월 08일
	소재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 043-535-3412		

(단위 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30037900617( 87)	1	130037900617( 106)	1	130037900617( 123)	1
130037900617( 88)	1	130037900617( 107)	1	130037900617( 124)	1+
130037900617( 89)	1	130037900617( 109)	1	130037900617( 125)	1+
130037900617( 90)	1	130037900617( 110)	1	130037900617( 126)	1+
130037900617( 91)	1+	130037900617( 111)	1	130037900617( 128)	1
130037900617( 92)	1+	130037900617( 113)	1+	130037900617( 129)	1
130037900617( 95)	1+	130037900617( 114)	1	130037900617( 130)	1
130037900617( 97)	1	130037900617( 115)	1+	130037900617( 131)	1
130037900617( 98)	1	130037900617( 116)	1	130037900617( 132)	1
130037900617( 99)	1+	130037900617( 117)	1	130037900617( 134)	1
130037900617( 100)	1+	130037900617( 118)	1+	130037900617( 136)	1+
130037900617( 101)	1	130037900617( 119)	1+	130037900617( 137)	1+
130037900617( 102)	1	130037900617( 120)	1+	130037900617( 138)	1
130037900617( 104)	1	130037900617( 121)	1	130037900617( 139)	1
130037900617( 105)	1+	130037900617( 122)	1+	130037900617( 140)	1+

전체 : 45두 ( 1+ 등급 : 18 1 등급 : 27 2 등급 : 0 동위등급 : 0 )

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6-05-11 09:22:35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  
 ※ 납품내역은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  
 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센터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 [백상지 80 g/㎡ (재활용품)]

## 원본대조필


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4.16.>

제 충북10-20260508-0016-0 호

# 도축검사증명서

- 가축의 종류 : 돼지
- 두수 및 이력번호(소, 돼지, 닭, 오리만 해당합니다) : 70 (130037900617)
- 중량 : 지육 6538 kg, 내장 등 기타 980 kg
- 작업장명 : (주)팜스코
- 검인번호 : 충북10
- 도축일 : 2026년 05월 08일
- 도축의뢰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
성명 김남욱

의뢰업소 (주)팜스코
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 ]여, [ O]부

9. 수입소의 경우

-수출국가명 :

-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 36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 0 kg)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·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6년 05월 08일

검사관 소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 
음성축산물검사소

성명 : 신다혜 (서명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7577 )

